

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03호(2009.12.1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, 2017.12.29.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198호(2018.06.2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106호(2019.04.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98호(2020.09.2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32호(2025.03.24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·고시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06월 26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32-19번지 일대
- 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72,799㎡
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노해관)
- 마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6, 2층
- 바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
- 사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1.02.26.
- 아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: 2025.06.23.

자. 변경사유 :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기간 연장 총회 의결에
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

차. 변경내용

- 정비구역의 면적 : $73,068\text{m}^2 \rightarrow 72,799\text{m}^2$ (감 269m^2)
-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$\rightarrow$ 120개월